

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7
----------	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7월 6일

발 의 자 : 이창열 의장

찬 성 자 : 김성기, 김광성

남진삼, 심현정

임현우, 김진옥 의원

1. 주 문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 및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제3항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활동기간은 2026년 7월 13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- 평창군의회 의원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행동하여야 하며, 주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므로,
-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및 직권남용 등에 관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,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「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라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

나.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제3항

다. 「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

【관계법령】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□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

제2조(설치) ① 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(이하 “본회의”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예산안 관련 안건(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말한다)의 심사를 포함한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,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□ 「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제 관한 규칙」

제2조(구성)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